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. 6. 7 선고 2023가단214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(개명 전: B)

소송대리인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4. 5. 24.

판 결 선 고 2024. 6. 7.

주 문

1. 피고와 E(F생) 사이의 충남 예산군 G 답 2189.1㎡에 관해 2022. 1. 1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E에게 충남 예산군 G 답 2189.1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2. 1. 21. 접수 제1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와 같다.

2. 청구에 관한 판단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이홍관

별지

1) 원고의 등기소 '홍성지원'은 오기로 보인다.